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. 11. 5 선고 2019가단82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11. 5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73,289m²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9. 7. 14. 접수 제80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7797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

2013. 11. 21. 승소판결(2013. 12. 24. 확정)을 받은 C의 채권자이다.

나.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소유 지분(1/3)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.

다. 이에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송오섭